

05 지방세 세율 개요

세 목	과 세 대 상		세 율	
취 득 세	부동산, 차량 등 취득		일반세율 : 2.8%, 3.5%, 4.0% 등 유상취득(주택) : 1.0% ~ 3.0% 중과세율 : 4.4%, 8.0%, 8.4% 등	
지방소비세	부가가치세(국세)		부가가치세액의 25.3%('21년부터)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	
지방소득세	종합소득, 퇴직소득		1천분의 6 ~ 1천분의 45	
	양도소득		1천분의 6 ~ 1천분의 45, 1천분의 10 ~ 1천분의 70	
	법인소득		1천분의 9 ~ 1천분의 24	
	특별징수		법인·소득세액의 100분의 10	
주 민 세	개인분	개인	1만원 이내(주민청구시 1만5천원 이내)	
	사업소분	사업소 연면적 (330㎡ 초과) 개인사업자, 법인	1㎡당 250원(폐수,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㎡당 500원)	
	종업원분	급여액(1억8천만원 초과)	급여총액의 0.5%	
자동차세	소유분	승용 자동차	비영업용 영업용	년 1cc당 80 ~ 200원 년 1cc당 18 ~ 24원
		승합 자동차	화물자동차	2만5천원 ~ 11만5천원
	주행분	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국세)	교통세액의 36% (탄력세율 26%, '09.5.21)	
	담배소비세	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		20개비(1갑)당 1,007원
레 저 세	승마(승자) 투표권 발매액		발매액의 10%	
지역자원 시설세	특정시설분	건축물, 선박	재산가액의 0.04 ~ 0.12%	
	특정자원분	지하수, 발전용수 등	채수량 1㎡당 20원, 발전용수 10㎡당 2원	



세 목	과 세 대 상		세 율
지방교육세	취득세 2%세액×20%, 등록면허세액×20%, 레저세액×40%, 담배소비세액×43.99%, 주민세액(균등분)×25%, 자동차세액×30%, 재산세액(도시지역분 제외)×20%		
재 산 세	재산세	건축물, 주택, 토지, 선박, 항공기	주택 0.1, 0.15, 0.25, 0.4% 건축물 0.25% 토지 종합 : 0.2, 0.3, 0.5% 별도 : 0.2, 0.3, 0.4% 분리 : 0.07% ~ 4%
	재산세 도시지역분	토지, 건축물, 주택	§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.14%
등록면허세	등록	부동산 등기	보존(0.8), 이전(1.5, 2.0), 설정(0.2)
		선박 등기	보존(0.02), 기타(건당 1만5천원)
		차량의 등록	소유권 등록(비영업용 5%, 경차 2%)
		기계장비	소유권 등록(1), 설정(0.2), 기타(1만원)
		법인등기	영리법인 : 설립(0.4), 자본증가(0.4) 비영리법인 : 설립(0.2), 출자증가(0.2)
	면허	각종 인허가 등 면허	4천5백원 ~ 6만7천5백원

I. 지방세 개관

II.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

III. 유용한 세금정보

IV. 종과세외 비과세 · 감면제도

| 지방세 용어의 이해 |

- ▶ **지방자치단체**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·군세, 구세(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함
- ▶ **지방세**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·군세, 구세(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함
- ▶ **세무공무원**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함
- ▶ **납세자**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)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함
- ▶ **납세의무자**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(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)가 있는 자를 말함
- ▶ **납세의무의 성립, 확정, 소멸** 납세의무는 성립 → 확정 →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. 첫째,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·과세물건·과세표준·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,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. 둘째, 납세의무의 확정(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,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,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(국세: 신고납세), 보통징수(국세: 부과과세), 특별징수(국세: 원천징수) 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. 셋째,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,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, 충당, 부과 취소,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,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
- ▶ **과세물건**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 등을 말함
- ▶ **과세표준** 지방세 과세대상물건(토지·건물, 자동차 등)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, 수량,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.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
- ▶ **세율**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(또는 금액)로서 일반적으로 1,000분율로 표시되며, 세목에 따라서 금액,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



- ▶ **세액**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
- ▶ **납세고지서**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와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·과세표준·세율·세액·납부기한·납부장소·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부과와 징수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
- ▶ **법정신고기한**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함
- ▶ **신고납부**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,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됨.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됨
- ▶ **보통징수**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“납세고지서”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함
- ▶ **특별징수**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“원천징수제도”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함
- ▶ **가산세**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(신고납부의무 등)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
- ▶ **체납처분**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,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,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함
- ▶ **체납처분비**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·보관·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(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)을 말함
- ▶ **체납자**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함
- ▶ **체납액**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세, 체납처분비를 말함